

쉽게 배우는 환경법

5차시. 대기환경 및 폐기물 관리

1. 대기환경 분야의 환경법 제도

1.1 대기환경 관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대기공해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특히 인구밀도가 높고 자동차수는 많은 반면 이를 저감할 수 있는 도시녹지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대기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발전해왔다. 최근에는 대기오염문제가 광역화, 세분화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에 대한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대기환경을 관리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장치들이 요구되고 있다.

1.2 대기환경 관리 법률현황

(1) 대기환경보전법

가. 개요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사업장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자동차배출가스의 규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나.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

■ 규제지역 지정배경

중전과 같은 산업체 위주의 규제만으로는 대도시의 대기오염을 효과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어려우며, 오존의 경우 2차 오염물질인 관계로 같은 양이 배출되더라도 기상 및 지형여건에 따라 오염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대기오염 영향권역별로 환경용량을 감안하여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에 대한 다각적이고 집중적인 저감대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강화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정책·기술개발 시행으로 효율적인 지역대기질 관리를 시행하여 복잡 다양화하는 대기오염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대기보전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제도를 도입하였다.

■ 규제지역의 지정근거

1995년 12월에 대기환경보전법을 개정하여 “환경기준을 초과하였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기질의 개선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고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8조의3)을 신설하였다. 동 조항에 의거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를 초과하는 측정지점이 전체의 30%이상일 경우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다만 지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오염도가 개선되고 있어 향후 지정기준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4> 대기환경규제지역 지정기준 연평균 오염도

구분	아황산가스(SO ₂ , ppm)	이산화질소 (NO ₂ , ppm)	오존(O ₃ , ppm)	총먼지(TSP, μg/m ³)	미세먼지(PM -10, μg/m ³)
지정기준	0.024	0.04	0.08	120	64
환경기준	0.03	0.05	0.10	150	80

■ 대기환경규제지역 현황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대기환경규제지역)규정에 의거 1997년 7월에 지역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의 80% 이상인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 제외), 경기도 15개시(수원시·부천시·고양시·의정부시·안양시·군포시·의왕시·시흥시·안산시·과천시·구리시·남양주시·성남시·광명시·하남시)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고시하였다. 1999년 12월에는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으로 단시간 내에 이산화질소와 오존오염도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부산(김해 포함), 대구 및 광양만권역(여수, 광양, 순천, 하동 화력발전소)을 해당지자체와 협의 거쳐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고시하였다.

(2) 악취방지법

악취는 대기오염과 달리 원인물질이 다양하고 복잡적이며 국지적·순간적으로 발생·소멸하는 특성으로 인해 대기오염의 차원에서 전국을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으로는 민원 해결에 한계가 있어, 이를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분리하여 2004년 2월 9일 「악취방지법」을 제정하여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도록 하고자 한다.

악취방지법은 효율적인 악취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대상을 종전의 ‘시설’ 단위에서 ‘지역’ 단위로 전환하였고, 지정악취물질을 종전의 8종 외에 14종을 추가하여 총 22종으로 하고 그 적용시기를 연차적으로 확대 하도록 하는 한편,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해 악취측정방법 중 직접관능법의 객관성 결여와 계량화 비용이성을 개선하고자 공기희석관능법을 도입하고 공기희석관능법의 제한성을 보완하고자 기기분석법을 도입하는 등 과학적 기법으로 측정방법을 개선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여 시·도지사가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설정하는 등 지역별 실정과 여건에 적합한 악취관리대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였다. 이에 따라, 2012년 10월 기준 다음과 같이 9개 시도(28개 지역)에 대하여 악취관리 지역으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표5> 악취관리지역 지정현황('12.10월 현재)

○ 9개 시·도(28개 지역)에 대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

시·도	지정일자	지정지역	지정면적	비고	
울산광역시	'05.3.17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46,271천㎡	업격 기준	
		온산국가산업단지	24,659천㎡		
	'09.9.2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1476-1	7,587㎡	-	
		울주군 삼동면 하잠리 산405-3	2,131㎡	-	
경기도	'05.5.16	아산국가산단 포송지구	6.33천㎡	업격 기준	
		시화국가산업단지	안산시		4,424천㎡
			시흥시		16,443천㎡
		반월국가산업단지	15,374천㎡		
	반월도금지방산업단지	1.47천㎡			
	'11.1.10	오산시 누읍동 일반공업지역	460천㎡		
충청남도	'06.1.20	삼성화학단지(전용공업지역)	3,070천㎡	-	
		현대석유화학단지(전용공업지역)	3,307천㎡	-	
		현대오일뱅크(전용공업지역)	1,619천㎡	-	
		대죽지방산업단지	2,089천㎡	-	
	'10.11.30	아산국가산업단지 부곡지구 (당진군 송악읍 부곡리 564 외)	2,776천㎡	-	
		송산일반산업단지 (당진군 송산면 동곡리 168-10 외)	5,539천㎡	-	
인천광역시	'06.1.24	남동국가산업단지 ('09.3.2 추가지정)	10,545천㎡ (971천㎡)	업격 기준	
		인천서부지방산업단지	938천㎡		
		석남동·원창동 일반공업지역 ('09.3.2 추가지정)	9,171천㎡ (5,389천㎡)		
		백석·오류동 일원 ('11.12.13 추가지정)	15,507천㎡ (4,400천㎡)		
	'11.12.13	동구 화수동 일원	273천㎡		
	'12.10.2	동구 송현동 일원	329천㎡		
	'12.10.2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2,250천㎡		
부산광역시	'06.4.26	부산 신평·장림피혁공업사업조합 (폐수처리장)	15천㎡	-	
전라북도	'07.10.12	우리밀축산영농조합(축산시설)	27.1천㎡	-	

시·도	지정일자	지정지역	지정면적	비고
대전광역시	'07.12.28	대전 1.2.3.4 사업단지 및 인근()	5,529.5 ㎡	-
강원도	'08.4.28	영월군 서면 쌍용리 일원	101.5 ㎡	-
경상북도	'08.12.4	의성군 금성면 개일리 446-1, 467, 467-2	7,294㎡	-

(3)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

중전의 '지하생활공간 공기질 관리법'을 2003년 5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으로 개정하여 2004년 5월부터 시행되었다.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 질 관리법은 다중이용시설과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일 정규모 이상의 지하역사, 지하도상가, 대합실, 여객터미널, 박물관, 의료기관, 실내주차장 등

이 그 대상이 된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의 설정,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의 교육, 공기정화설비 및 환기설비의 설치,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4)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은 대기오염이 심각한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고, 대기오염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2003년 12월에 제정되었다. 동법의 대기관리 권역은 “수도권지역(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지역)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및 당해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들이 수도권 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수도권 대기개선 특별대책’을 통해 수도권의 대기질을 2014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질소산화물 등 주요 오염물질 배출총량을 삭감하여 맑은 날 남산에서 인천 앞바다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지역 배출총량관리제, 사업장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운행차 저공해화 및 저공해차량 구입 의무화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을 통하여 제도화된 특별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도권지역 중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당해 지역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지역의 대기오염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설정하여 특별관리하도록 하였다.

<표6> 대기관리권역(특별법 시행령, 별표1)

지역범위	
서울특별시	전지역
인천광역시	옹진군(옹진군 영흥면은 제외)을 제외한 전지역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남양주시, 구리시, 하남시, 성남시, 의왕시, 군포시, 과천시, 안양시, 광명시, 시흥시, 부천시, 안산시, 수원시, 용인시, 화성시, 오산시, 평택시, 과주시, 동두천시, 양주시, 이천시

둘째, 환경부장관은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개선목표, 지역배출 허용총량 할당, 저감계획 등이 포함된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계획기간 : 10년)을 수립하고,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셋째,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먼지를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연간 배출할 수 있는 오염물질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에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사업장총량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넷째, 자동차를 판매하는 자는 저공해자동차보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저공해자동차를 일정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인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하여는 「대기환경보전법」보다 훨씬 강화된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따라 검사한 후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토록 하는 등 운행차의 배출가스 관리제도를 강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수도권대기관리권역에 공급되는 도로중 건축용, 자동차보수용 및 도로표지용 도로에 대하여 국내 최초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함유기준을 설정하여 보다 환경친화적인 도로만 공급·판매하도록 의무화하였다.

1.4 대기환경 관리제도

(1) 지역배출총량관리제도

지역총량관리제는 특정 지역에 대한 대기질 목표 달성을 위한 환경용량을 산출하고, 이를 기초로 당해 지역의 단계별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여 이 범위 내에서 오염원을 총량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말하며 수도권의 경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의하여 수도권지역의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및 사업장오염물질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를 두고 대기관리권역에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을 할당하고 이를 초과하여 배출한 경우에는 총량초과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2) 배출권거래제도

총량규제 대상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의한 기본부과금 부과를 면제하도록 하는 대신, 총량규제 대상사업장이 할당받은 오염물질 배출량 중 일정부분을 상품화하여 다른 사업장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2012년 현재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배출허용총량의 이전)에 의해 대기오염물질 배출권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3) 대기배출부과금제도

대기배출부과금제도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오염물질 배출정도에 따라 경제적 부담으로서 부과금을 부과함으로써 사업자가 스스로 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토록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1년 12월에 도입되었으며, 1983년 9월부터 시행되었다.

배출부과금의 종류에는 기본부과금과 초과부과금이 있으며, 기본배출부과금제도는 1996

년 8월에 도입되어 1997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기본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량에 대하여 부과되며 초과부과금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대기오염물질량에 대하여 부과된다.

기본부과금 대상 대기오염물질은 황산화물과 먼지 등이며,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오염물질배출량에 대하여 반기별로 부과된다. 오염물질 배출량은 배출농도×배출가스량×조업시간×조업일수에 의하여 산정된다. 초과부과금의 대상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로서 황산화물, 암모니아, 황화수소, 아황산탄소, 먼지, 불소화합물, 염화수소, 염소, 시안화수소, 악취 등의 오염물질이 대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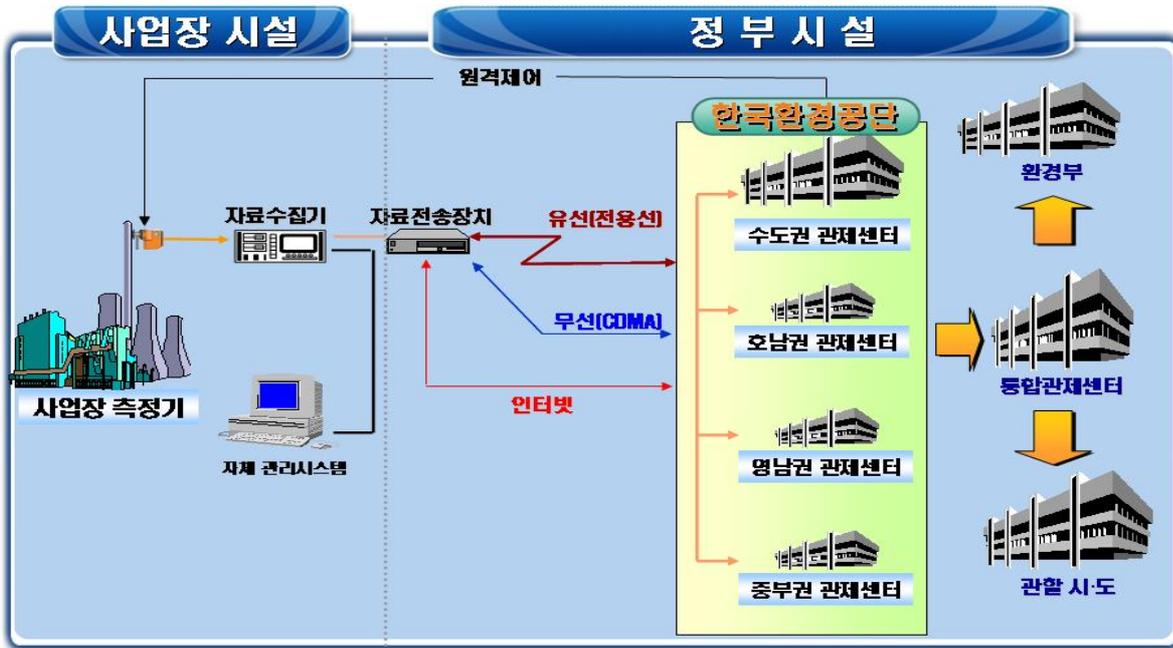
(4) 특정대기유해물질 관리제도

특정대기유해물질의 정의는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은 입지 등에 따라 설치에 제한을 둘 수 있으며 환경관리인 선임 및 자가측정 횟수 등에 있어서 규제가 강화되어 있는 등 일반 대기오염물질 보다 엄격한 관리를 요하고 있다. 현재 지정된 특정대기유해물질은 납, 벤젠 등 35개 물질로서 단계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5) CleanSYS(굴뚝 TMS)에 의한 대형배출사업장 관리

CleanSYS(굴뚝원격감시체계 : Tele-Monitoring System) 구축은 대형배출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상시 측정, 공정개선을 통한 오염물질 배출량의 감소를 위한 것으로 궁극적으로는 대기질을 개선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 동법 시행령 제17조 참조). 부착 대상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7조 3항 별표3에서 정하는 시설이다.

굴뚝배출가스에 대한 자동감시체제는 굴뚝별로 오염물질 항목별 배출상태, 공장가동상태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등 선진국의 사업장에서는 긴급사태 예측, 사고의 신속대처 및 공정관리 등에 적극 활용하는 등 그 설치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으며 그 체계는 다음과 같다.



굴뚝에 설치된 자동측정기기는 먼지, SO₂, NO_x, NH₃, HCl, HF, CO항목을 연속적으로 측정하여 5분 및 30분마다 측정데이터를 생산하고 있는데, 1988년 7월 경상남도지사가 울산·온산특별대책지역의 31개 업소에 설치명령을 함으로써 부착하기 시작하였다. 부착시행 초기에는 기술적(측정, 전송 등)인 여러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는 이러한 제 문제점이 해결되어 자료전송률이 100%에 이르고, 상대정확도 시험 및 통합 시험 등으로 측정자료의 신뢰성이 크게 향상되었다. 2011년말 기준, 전국 379개 대형배출사업장(1~3층) 892개 굴뚝에 2,263대의 측정기기를 부착·운영하고 있다.

굴뚝원격감시체계는 과학적인 상시 감시를 통해 대기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량규제실시, 배출권거래제 도입 등과 같은 오염물질총량관리를 위한 사전적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도 의의가 매우 크다.

3. 폐기물 분야의 환경법 및 제도

3.1 폐기물 관리의 필요성

폐기물 문제는 현대사회의 대량 생산·소비체계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지속가능한 자원순환형 사회경제 체제로 전환시키고 기술개발을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등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폐기물 정책의 요체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자연으로부터 자원의 채취를 최소화 하는 동시에 자원으로 반환되는 폐기물을 최대화함으로써 환경을 보

전하고 국민의 건강한 삶을 확보하는데 있다.

3.2 폐기물 관련 법·제도의 발전단계

우리나라의 폐기물 관리 법제는 2원화 - 1원화 - 세분화의 단계를 거쳐 왔다. 폐기물 문제가 심각하지 않았던 1980년대 중반 이전에는 생활폐기물은 ‘오물청소법’, 사업장 폐기물은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이원적으로 관리되었다. 그러나 1986년 ‘폐기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관리체계가 통합되어 일원화된 이후에 폐기물관리법이 다시 재활용활성화 및 폐기물처리시설 치 촉진을 위해 분법화 됨에 따라 법률체계가 세분화·전문화되었다.

(1) 오물청소법 시대 (1961 ~ 1977)

1960 ~ 1970년대는 청소개념에 기초한 오물청소법 시대로서 주로 도시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및 분뇨처리를 대상으로 다루었다. 오물청소법은 청소지역을 특별청소지역과 계절적 청소지역으로 구분하고, 청소지역, 하수도, 하천 및 해역 등에 오물투기를 금지하였다.

(2) 환경보전법 시대(1978 ~ 1986)

1970년대 말에 들어 환경문제가 점차 사회적 문제로 확산되면서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다. 또한 농촌 폐비닐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합성수지 폐기물 관리 사업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원재생공사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폐기물관리는 ‘처리’에 중점을 두어 생활폐기물은 여전히 오물청소법에 의하여 관리되고 산업폐기물만 환경보전법에 의하여 관리되었다.

(3) 폐기물관리법 시대(1986 ~ 1992)

1986년 환경청은 폐기물관리체계의 일원화를 위하여 오물청소법과 환경보전법의 폐기물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폐기물관리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재활용 개념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었다. 1991년에는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하여 일반폐기물과 산업폐기물로 구분하던 폐기물의 분류체계를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성 정도를 기준으로 일반폐기물과 특정폐기물로 구분하고 특정폐기물은 국가, 일반폐기물은 지자체에 처리책임을 부과하였다. 종래 폐기물관리법의 적용대상인 분뇨 등은 1991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수질관리 측면에서 다루어지게 되었다.

(4) 분법화 시대(1993 ~ 현재)

1992년 폐기물관리법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1995년에는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을 분법·정비하였다. 또한

1994년 바젤협약에 가입하면서 바젤협약의 국내이행을 위해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후 2003년에는 ‘건설 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건설공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처리하고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국민경제발전과 공공복리증진토록 하였다. 2005년에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유치지역의 발전 및 주민의 생활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별도로 제정하였다.

3.3 폐기물관리법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 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폐기물관리법을 중심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관리되고 있으며, 기타 관련 법률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국가는 폐기물관리 전반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며, 광역지방자치단체(시·도)는 관할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사업에 대한 조정 등을 수행한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책무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있고, 사업장폐기물은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그 처리에 대한 책임이 있다.

(1) 폐기물관리법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폐기물 분야의 기본적인 법률로서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지정폐기물, 감염성 폐기물 등에 대한 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생활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외의 가정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사업장폐기물 : 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의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 지정폐기물 : 사업장폐기물중 폐유·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기물

물

- 감염성폐기물 : 지정폐기물중 인체조직 등 적출물,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의
료기관이나 시험·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자원의 절약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법률로서 재활용품, 1회용품 사용억제, 폐기물부담금,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분리배출표시, 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 이행, 제조업자의 재활용 의무, 재활용부과금, 재활용제품 구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은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대한 기존 법률의 근거 규정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하여 건설폐기물 관련 단일 법률을 입법화 한 것으로서 200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양질의 순환골재 생산 유도 및 순환골재의 사용 의무화 등이다.

(4)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1992년 12월에 공포되었으며 1994년 2월 바젤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바젤협약 사항이 국내에 발효되었다.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은 총 4장 3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출입허가 및 취소, 수출입이동서류의 작성, 국내경유 동의, 수출입폐기물의 운반 또는 처리, 수출입금지, 폐기물 반출입 명령, 대집행 등 폐기물 수출입 등의 통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5)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유해물질의 사용을 억제하고 재활용이 쉽도록 제조하며 그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도록 하여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07년 4월에 제정되었다. 법률의 주요내용으로는 유해물질 사용제한과 재활용가능률 등의 준수, 제품의 재활용방법 등 재활용정보를 재활용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재활용정보 제공의무부여, 전기·전자제품의 제조·수입업자에 대한 회수·재활용의무 부여, 자동차 제조·수입업자 등의 역할 분담과 재활용방법 및 기준, 환경오염물질의 분리·보관과 처리·재활용비용의 효율적 결정을 유도하도록 하고 있다.

(6)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확보의 촉진과 그 주변지역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원활히 하고 주변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사업의, 촉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지역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3.4 폐기물관리제도

폐기물 관리제도는 크게 폐기물 최소화와 폐기물 자원화 등 두 가지 축으로 구분되어 시행되고 있다. 우선 폐기물 최소화를 위해서 시행하는 감량화 정책으로는 폐기물 부담금제도, 쓰레기종량제, 일회용품 사용 규제제도,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음식물류폐기물 줄이기 등이 시행되고 있으며, 폐기물 자원화를 위해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재생제품 우선구매제도, 건설폐기물재활용제도, 빈용기보증금제도, 분리배출표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다. 이제부터는 각 제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 폐기물 감량화 관련 제도

가. 폐기물부담금제도

■ 개요

- 특정유해물질 또는 유독물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에 대해 그 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해당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와 수입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하여 폐기물 발생 억제와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한 제도
- 우리나라도 오염자부담원칙에 따라 1992년 이 제도를 도입하여 1993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징수된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 재활용사업, 폐기물처리시설설치 지원 등에 사용하고 있다.

■ 부과대상품목(6개품목 9종의 제품)

- 살충제, 유독물제품을 담은 용기
- 부동산액
- 껌
- 1회용 기저귀
- 담배
- 플라스틱 제품 등 8개 제품군

나. 쓰레기종량제

■ 개요

쓰레기 종량제란 “쓰레기를 버린 만큼 비용을 낸다”는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쓰레기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 의의

- 주택의 크기 또는 재산세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수수료를 적용하던 기존의 제도에서 1995년 1월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자발적으로 분리배출하게 되었음
- 1인당 쓰레기량이 1994년에는 1.33kg에서 2000년 0.98kg으로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1995-2000년 동안 총 3,772만 톤의 쓰레기 발생량 감소와 1,346만 톤의 재활용품 분리배출량 증가로 총 5조 2천억 원의 사회 경제적 편익

다. 일회용품사용 규제제도

■ 개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일회용품의 정의는 같은 용도에 다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한번 사용하도록 고안된 제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품을 뜻한다.

■ 규제대상품목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별표1) 상 규제대상이 되는 일회용품은 아래와 같은 제품임

- 1회용 컵·접시·용기(종이·금속박·합성수지재질 등으로 제조된 것을 말한다)
- 1회용나무젓가락
- 이쑤시개(전분으로 제조한 것을 제외한다)
- 1회용 수저·포크·ナイ프
- 1회용 광고선전물(신문·잡지 등에 끼워 배포하거나, 고객에게 배포하는 광고 전단지과 카탈로그 등 단순 광고목적의 광고선전물로서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것에 한한다)
- 1회용 면도기·칫솔
- 1회용 치약·샴푸·린스
- 1회용 봉투·쇼핑백(환경부장관이 재질, 규격, 용도, 형태 등을 감안하여 고시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 1회용 응원용품(응원객, 관람객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막대풍선, 비닐방석 등을 말한다)
- 1회용 비닐식탁보

라. 포장폐기물 발생억제

■ 개요

포장폐기물이란 일반적으로 제품의 유통을 위해 포장재로 사용된 후 버려지는 쓰레기로서 생활소득 수준이 향상되면서 다양한 포장재가 개발되고 그 사용량 또한 급증하고 있어 귀중한 자원낭비 뿐만 아니라 매립하거나 소각할 때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재활용을 하는 데에도 많은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이에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불필요한 포장을 줄이고 최대한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으로 변경하거나 재활용이 용이하도록 포장재의 재질을 환경친화적인 재질로 대체하며,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질의 사용을 규제하는 등 포장폐기물의 양적인 감량과 아울러 질적인 감량을 유도하고 있다.

■ 추진경과

포장폐기물 발생억제정책은 1993년 8월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와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근거하여 과대포장 규제, PVC 및 발포폴리스티렌 포장재 사용제한, 리필제품 생산권고제도 등을 실시하고, 1995년 8월에는 가전제품 포장용 완충재의 감량화를 위한 ‘가전제품 포장용 합성수지 재질 완충재 감량화 지침’을 고시하였으며, 1996년 7월에는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의 감량화를 위한 ‘합성수지 재질포장재의 연차별 감량화지침’을 고시하여 운영해 왔다.

1999년 2월에는 과대포장으로 인정되는 제품에 대해 포장전문기관의 검사를 받도록 하는 ‘포장검사명령제’와 포장공간비율·재질·횡수를 표시하도록 권장하는 ‘포장표시 권장제’를 도입하였고, 2002년 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에 따라 2003년 4월 종전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재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등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하였으며, 2006년 3월에는 포장재의 중금속 함유량 제한을 권장하는 포장재중금속제한 권장제를 도입하였다.

(2) 폐기물 자원화 관련 제도

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 개요

- 제품생산자나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생산자에게 그 제품이나 포장재의 폐기물에 대하여 일정량의 재활용의무를 부여하여 재활용하게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이상의 재활용 부과금을 생산자에게 부과하는 제도

■ 재활용의무 대상제품 및 포장재

- 4대 포장재와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 포장재)와 4개 제품(타이어, 윤활유, 전지류, 형광등) 등의 품목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정에 의해 전자제품 등은 삭제

■ 의의

- 종전의 생산자들은 재활용이 쉬운 재질, 구조의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판매하는 시점까지만 책임을 지고, 사용 후 발생된 폐기물은 소비자의 책임이었으나, 이제는 사용 후 발생하는 폐기물의 재활용까지 생산자의 책임으로 범위를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음
- 제품의 생산자들로 하여금 제품의 설계, 제조, 유통소비 및 폐기 전 과정에 걸쳐 환경친화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함으로써 Reduction, Reuse, Recycling을 촉진하여 자원순환형 사회를 도모

나. 재생제품 우선구매제도

-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1조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대상기관에 대하여 폐지류, 폐플라스틱류 등 269개 품목에 대해 재활용제품 우선 구매
- 초기에 사무용제품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최근에는 건설자재 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제도

건설폐기물은 환경부와 국토해양부가 각각 역할을 분담하고 있으며, 환경부의 경우 폐기물관리 및 재활용기본계획 수립 등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 수립, 국토해양부의 경우 재생골재의 재활용 및 건설 분야 전반의 정책 수립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관련 법령

- 폐기물관리법에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하여 폐기물의 처리방법, 재활용 자재의 품질기준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건설폐기물 재활용과 관련하여 지정부산물(토사, 폐콘트리트, 폐아스콘 등)을 규정하고, 건설업체에 대하여 지정부산물에 대한 재활용 계획 수립과 재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중점관리 대상업자 및 지정부산물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연간 시공금액 150억원 이상인 건설업자를 ‘중점관리 대상업자’로 지정하고 있으며, 건설폐기물 중 ‘지정부산물’의 일정량을 재활용하도록 의무화(50~75%)하고 있음
- 지정부산물 : 철강슬래그/석탄재, 토사(토석 포함), 콘크리트 덩이/아스팔트 콘크리트/벽돌/폐목재 등

라. 빈 용기 보증금 제도

■ 개요

- 사용된 용기의 회수·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반복사용이 가능한 제품의 용기의 사용에 대한 보증금을 제품가격에 추가하여 판매한 뒤, 소비자가 빈 용기를 반환하는 시점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
- 빈 용기의 도·소매 유통단계에서 유통과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수수료를 지급함

■ 대상품목

- 주세법 제4조제2호의 발효주류 및 동법 제4조제3호의 증류주류 등의 주류와 청량음료류 등 2개 제품군

마. 분리배출표시제도

■ 개요

-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고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2003년부터 분리배출표시제도 시행

■ 표시대상제품

<의무표시품목>

- 식품품류, 농·수·축산물류, 세재류, 화장품류, 의약품 및 의약외품, 부탄가스제품, 살충·살균제품의 포장재에 사용하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재질의 포장재(빈용기 보증금이 포함된 제품의 용기 제외)
-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 포장재

<지정표시 품목>

-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재료를 사용하는 제품포장재 중 분리배출 표시지정을 받은

품목

참고문헌

- 김홍균, 2010, 환경법, 홍문사
- 이순자, 2012, 환경법, 법원사
- 박균성, 함태성, 2012, 환경법, 박영사
- David Wilkinson, 2002, Environment and Law, routledge